

2026. 8.

**특 허 심 사 기 획 국
특 허 심 사 제 도 과**

□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취급 명령 절차 필요

- **현행** 영 제12조는 **사전에** 정해진 **비밀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출원만 특허분류확정 후 **지재처** 조회 및 **방사청** 회신에 따라 비밀취급 여부가 결정

* 국방상 비밀취급이 필요한 발명을 선별하기 위해 지재처-방사청이 협의하여 정한 분류기준(영 제11조)

[현행 비밀취급절차(영 제12조)]

- ① (조회)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취급 필요 여부 조회
- ② (통지) 발명자·출원인·대리인 등에게 조회 사실 통지 및 보안유지 요청
- ③ (회신) 방위사업청장은 2개월 이내 회신, 필요 시 비밀취급 요청
- ④ (조치) 요청을 받으면 비밀취급 명령, 요청이 없으면 보안유지 요청 해제통지

- 현행은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 대상이 아닌 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근거 無

⇒ 국방상 중요기술의 개발·관리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여도, 비밀취급 불가

※ 기존 출원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출원 취하·재출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 특허공보에 잘못 포함된 개인정보의 삭제 근거 마련 필요

- **임시명세서 활용 확대** 등으로 연구노트 등 비형식 서류제출이 늘면서, 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혼입·공개 우려*** 증대

* 임시명세서로 제출된 사내 아이디어 제안서가 편집 없이 제출되면서, 발명자의 전화번호·부서·이메일주소 등 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 등

- 명세서 등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보에**

서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관련 처리 기준은 無

→ 특허출원의 공개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개 목적과 무관하게 잘못 포함된 개인정보의 개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Ⅱ 주요 개정 사항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절차 개선 (특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 개정 내용

- 사전에 정해진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원이라도,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비밀취급을 명하도록 함(제12조제6항 신설)
- 신설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명한 출원에도 비밀해제 협의·청구(제13조) 및 외국출원 금지(제15조)가 적용되도록 인용조문 정비

< 특허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안) >

현 행	개정안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 ⑤ (생략)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현 행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발명자 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었거나 그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 효과

- 국방상 필요 시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해 비밀취급할 수 있어 비밀취급 공백 해소 가능

□ 개정 내용

- 특허공보(등록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에 잘못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를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안) >

현 행	개정안
제19조(특허공보) ①·② (생략) ⇒	제19조(특허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u>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u>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u><단서 삭제></u>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공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현행	개정안
	<u>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안) >

현 행	개정안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② (생략)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u>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u>	③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u><단서 삭제></u>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정 효과

- 특허공보에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

Ⅲ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6. 8~9월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 '26. 10~11월
- 공포 및 시행 : '26. 12월

붙임 1 개인정보보호 참고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6)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6 본문 '개인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붙임 2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공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취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공보의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없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었거나 그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지식재산처장은 <u>제12조제4항</u> 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 ----- <u>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u> ----- ----- ----- ----- ----- ----- ----- -----.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특허공보) ①·② (생략)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

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

-----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 . <단서 삭제>

1. ~ 10. (생략) ④·⑤ (생략) <u><신설></u>	1. ~ 1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u>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공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u> <u>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u>2.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	--